르엘 신반포 입주자 모집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르엘 신반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 분양안내(http://www.lottecastle.co.kr)로 대체하여 운영 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르엘 신반포는 분양 상담전화(☎1811-8448)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3.20.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아파트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서초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주택은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3.20.)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주민등록표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9.03.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 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제4조 제3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당첨·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illegible]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illegible]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무주택기간 및 무주택 여부를 판단 청약 가점을 산정함에 있어 세대원 소유 주택과 각 세대별로 인정된 가점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분양권등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9.03.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는 신청한 분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illegibl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공개됩니다.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순위를 부여합니다. [illegibl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illegibl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illegible]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 청약자라고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0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며, 향후 당첨된 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람 [illegible] ■ 중복 청약접수 관련 [illegible]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illegible] ■ 투기과열지구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illegible]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illegible]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조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제2항에 의거 계약취소주택(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해지된 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계약취소주택이 19세대 또는 19호 이하인 경우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illegible]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청약자 본인이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청약하셔야 하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일반 1순위(해당)(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	일반 1순위(기타)(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 경기도·인천시 거주)	일반 2순위(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시 거주)	당첨자발표	서류제출기간(일반 / 당첨자)	계약체결
일 정	20년 3월 30일(월요일)	20년 3월 31일(화요일)	20년 4월 01일(수요일)	20년 4월 09일(목요일)	20년 4월 14일(화요일) ~ 4월 20일(월요일)	20년 4월 22일(수요일) ~ 4월 24일(금요일)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 자격검증 필요서류 청약신청자격 서류 (10:00 ~ 16:00)	계약서류 지참하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갤러리)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애플앱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 가능)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애플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08.16.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 14528호(2020.03.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번지 외 1필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4층 3개동, 총 280세대 중 일반공급 아파트 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조합원공급 177세대, 임대주택 35세대, 보류지 1세대 제외)
■ 입주시기 : 2022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타입(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일반분양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	비고
민영주택	2020000312	01	54.9891	54	54.9891	18.5329	73.5220	55.6790	129.2010	24.30	13	1	
		02	59.8852	59	59.8852	20.0039	79.8891	60.6365	140.5256	26.47	13	1	
		03	84.1269A	84A	84.1269	27.6821	111.8090	85.1824	196.9914	37.19	13	4	
		04	84.3798B	84B	84.3798	27.5605	111.9403	85.4386	197.3789	37.30	20	1	
		05	100.9605	100	100.9605	31.4067	132.3672	102.2272	234.5944	44.63	8	2	
합 계											67	9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 등으로 없는 경우 최하층을 말함. [illegible]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 세대)

주택형	동	층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금 1차 계약 시(10%)	계약금 2차 계약후30일내(10%)	중도금 1회(10%) 2020-10-16	2회(10%) 2021-02-19	3회(10%) 2021-07-02	4회(10%) 2022-01-07	5회(10%) 2022-05-13	6회(10%) 2022-09-23	잔금(20%) 입주지정일
54.9891 54	203동 (3호)	2층	1	728,052	285,948	1,014,000	101,400	101,400	101,400	101,400	101,400	101,400	101,400	101,400	202,800
		4층	1	788,364	309,636	1,098,000	109,800	109,800	109,800	109,800	109,800	109,800	109,800	109,800	219,600
		5층~9층	3	808,468	317,532	1,126,000	112,600	112,600	112,600	112,600	112,600	112,600	112,600	112,600	225,200
		10층 이상	8	816,366	320,634	1,137,000	113,700	113,700	113,700	113,700	113,700	113,700	113,700	113,700	227,400
59.8852 59	203동 (4호)	2층	1	786,210	308,790	1,095,000	109,500	109,500	109,500	109,500	109,500	109,500	109,500	109,500	219,000
		5층~9층	1	874,524	343,476	1,218,000	121,800	121,800	121,800	121,800	121,800	121,800	121,800	121,800	243,600
		10층 이상	11	883,140	346,860	1,230,000	123,000	123,000	123,000	123,000	123,000	123,000	123,000	123,000	246,000
84.1269 84A	201동(1,2호) 202동(1,2호) 203동(2호)	2층	4	1,094,232	429,768	1,524,000	152,400	152,400	152,400	152,400	152,400	152,400	152,400	152,400	304,800
		3층	5	1,131,568	444,432	1,576,000	157,600	157,600	157,600	157,600	157,600	157,600	157,600	157,600	315,200
		4층	4	1,186,854	466,146	1,653,000	165,300	165,300	165,300	165,300	165,300	165,300	165,300	165,300	330,600
84.3798 84B	203동 (1호)	2층	1	1,064,794	418,206	1,483,000	148,300	148,300	148,300	148,300	148,300	148,300	148,300	148,300	296,600
		3층	1	1,101,412	432,588	1,534,000	153,400	153,400	153,400	153,400	153,400	153,400	153,400	153,400	306,800
		4층	1	1,157,416	454,584	1,612,0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322,400
		5층~9층	4	1,188,290	466,710	1,655,000	165,500	165,500	165,500	165,500	165,500	165,500	165,500	165,500	331,000
		10층 이상	13	1,200,496	471,504	1,672,000	167,200	167,200	167,200	167,200	167,200	167,200	167,200	167,200	334,400
100.9605 100	202동 (3,4호)	2층	2	1,266,552	497,448	1,764,000	176,400	176,400	176,400	176,400	176,400	176,400	176,400	176,400	352,800
		3층	2	1,310,350	514,650	1,825,000	182,500	182,500	182,500	182,500	182,500	182,500	182,500	182,500	365,000
		4층	2	1,375,688	540,312	1,916,000	191,600	191,600	191,600	191,600	191,600	191,600	191,600	191,600	383,200
		5층	2	1,412,306	554,694	1,967,000	196,700	196,700	196,700	196,700	196,700	196,700	196,700	196,700	393,4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승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illegible]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연속 1년 이상(2019.03.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 (단, 2순위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 저축 요건 및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1년 이상)에 거주 요건 충족 시 당해 1순위 청약 가능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전 반드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 조회요망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전환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청약한 경우에 한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다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 / 추첨제)이 변경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1)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모집공고일 당일부터 1) 지역 전입(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접수불가)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 변경시 차액 충족)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된 이 있는 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됨. • 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 해외거주로 인정하고, 90일 이하 단순 해외여행, 어학연수, 출장 등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함.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1순위	85㎡ 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 추첨제 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으로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 /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 경기도·인천시 거주
	85㎡ 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50% / 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를 우선 선정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illegible]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2019.03.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100%	0%
전용면적 85㎡초과	50%	50%

• 2007.09.0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자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한다. (동 규칙 제2조 제7호의3)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록되어 혼인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2020.02.0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산정시에는 제53조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음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미혼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만 인정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에 따름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8호 [별표1의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점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illegible]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청약전 반드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요망

•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 조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일반공급 청약신청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아야 함 •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자는 청약전 반드시 서울특별시 전입일 확인 요망(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확인 요망) • 본 아파트의 1순위 해당지역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 신청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착오로 인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청약신청 접수일	청약신청방법
일반공급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2019.03.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2020.03.30. (월요일)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원칙(PC 또는 스마트폰)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아래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20.03.31. (화요일) (08:00 ~ 17:30)	
	2순위	서울특별시 거주자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20.04.01. (수요일) (08:00 ~ 17:30)	

※ 견본주택 내에서는 청약접수가 불가함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가점제 적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1순위 일정별로 해당되는 청약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 청약가능 - 서울특별시 1년 미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해당지역 접수일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서울)" 1순위에서 1순위 기타지역(1순위) 및 후순위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상실 •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KB국민은행 포함)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신청화면에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1영업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항 등)이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청약자격 사전관리」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 17:30은 청약접수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은행에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신청자가 기재한 사항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격 · 입력사항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될 경우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함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 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 ~ 17:30으로 변경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서류 생략하오니 직접 해당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확정일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신일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illegible]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로 우선공급 하됩니다.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자 공급신청자가 수도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는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자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부적격자에 대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20.04.09. (목요일)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은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그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보다 낮은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4.09 (목) ~ 2020.04.18 (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4.09.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명기간 내 서류 미비 시 당첨을 취소하며 자격확인서류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한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일반공급)	2020.04.14(화요일) ~ 04.20.(월요일) 7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갤러리)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3.20.)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모집공고일 기준 2년 기간 지정하여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계약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해당자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부 등본	해당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금융결제원 발급) 등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위임장	당첨자(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계약 체결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illegible]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4.22.(수요일) ~ 04.24.(금요일) 3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갤러리)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유의사항

[illegible]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른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llegible]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필수	해당자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1차	KB국민은행	465101-01-279300	롯데건설(주), 신반포14차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
계약금 2차 / 중도금 / 잔금	KB국민은행	465101-01-279313	롯데건설(주), 신반포14차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2차부터는 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정순위 등 부적격 당첨자가 규정한 환불기간 내에 환불합니다. 단, 환불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이며,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전체 분양세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규제(분양가9억원 초과)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대출은 불가하며, 이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계약자의 중도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과 의무로 중도금을 마련하여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illegible]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클럽, GX룸, 탁구장), 작은도서관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공품목,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발코니 확장비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54	59	84A	84B	100
발코니 확장 금액		18,000,000	19,000,000	22,000,000	22,000,000	24,000,000
계약금(10%)	계약 시	1,800,000	1,900,000	2,200,000	2,200,000	2,40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16,200,000	17,100,000	19,800,000	19,800,000	21,600,000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선택1(부분) 설치위치	선택1(부분) 금액	선택2(전실) 설치위치	선택2(전실) 금액	비고
54	거실+안방 (실내기2대)	4,30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4대)	6,500,000	LG전자
59	거실+안방 (실내기2대)	4,30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4대)	6,500,000	
84A	거실+주방+안방 (실내기3대)	5,5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5대)	7,500,000	
84B	거실+주방+안방 (실내기3대)	5,5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5대)	7,500,000	
100	거실+주방+안방 (실내기3대)	5,5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침실4 (실내기6대)	8,500,000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선택제공인 매립형 냉매배관을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설치비를 감액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은 고급형(무풍, 공기청정 기능 포함 등)이 아닌 기본형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가전기기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제조사	적용주택형	금액	비고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형)	LG	전평형	800,000	BEY3GTBI
	쿠쿠		600,000	CIHR-D302FB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LG	전평형	6,800,000	S711SI24B
빌트인 김치냉장고	LG	전평형	1,700,000	K221PR14BR/L
전기오븐(고급형)	LG	전평형	550,000	MZ941CLC

■ 마감재 / 가구선택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적용 주택형	금액	비고
현관	3연동 중문	84A, 84B, 100	1,600,000	
바닥	전실 원목마루	54	3,800,000	
		59	4,000,000	
		84A, 84B	6,000,000	
		100	7,000,000	
주방	수입 주방가구	54, 59	16,000,000	
		84A, 84B, 100	18,000,000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54, 59	1,100,000	
		84A, 84B, 100	2,000,000	
	수입 식탁펜던트	54, 59	650,000	
		84A, 84B	900,000	
		100	1,300,000	
침실	침실2 패밀리룸	84A	3,400,000	
		84B	4,800,000	
	침실2 붙박이장	전타입	1,100,000	패밀리룸 선택 시 선택불가
	안방 붙박이장	84A, 84B, 100	3,900,000	TV형 / 수납형 중 선택
	침실4 서재형	100	2,500,000	
욕실	스타일업 패키지	전타입	3,500,000	
욕실+주방	외산수전 패키지	54	600,000	공용욕실 + 주방
		59, 84A, 84B, 100	700,000	공용욕실 + 부부욕실 + 주방

■ 열차단필름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선택1(거실) 설치위치	선택1(거실) 금 액	선택2(거실+침실) 설치위치	선택2(거실+침실) 금 액	비 고
54	거실 이중창 중 일면 적용	500,000	이중창 중 일면 적용 및 안방 발코니창 적용 (주방, 드레스룸 제외)	1,800,000	
59		600,000		1,900,000	
84A		700,000		2,200,000	
84B		1,000,000		2,600,000	
100		800,000		2,700,000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illegible]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KB국민은행	465101-01-279384	롯데건설(주)
잔금	KB국민은행	465101-01-279397	롯데건설(주)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 관련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illegible]

■ 발코니 확장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홍보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2.18. 개정시행) [illegible]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illegible]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구분		설계공지내용
공통	도로 및 기반시설	당 현장의 구역내에는 시설녹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기부채납 부지로 단지 내 소유 녹지가 아니며, 실제 시공 시 인접단지 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탈로그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부 공공보행통로 및 공원 등은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인접단지 개발에 따라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실시공 등,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입주 후 인접단지의 개발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휀스설치	보행 및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외곽 경계에 생울타리를 설치 예정이나 인허가협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허가	당 사업장은 2017년 9월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결과규정의 적용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등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아파트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별도 사전고지 없음.
	분양홍보물(모형, 카탈로그, 각종광고지)	[illegible]
	마감재	[illegible]
	공통사항	[illegible]
단지	필로티	모든 동별 1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의 필로티 내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
	단지출입구	[illegible]
	아파트 주동	[illegible]
	지하 주차장	[illegible]
	부대시설	[illegible]
	무인택배함	무인택배함은 지하1층 각 동 출입구 방풍실 내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할 수 있음.
	공급시설	201동, 202동, 203동 인근 하부 지하3층에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우수저류조 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03동 후면부 시설녹지쪽에 한전인입 TR박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한전과 협의후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한전, 지역난방,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기타사항	경비실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측 차량출입구와 연계하여 설치됨. 경비실과 주차차단기의 위치 및 규모, 개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공통사항	[illegible]

구분	내용
제공품목	[illegible]
가구공사	[illegible]
창호공사	[illegible]
전기/설비	[illegible]
발코니 및 실외기실	[illegible]
유상옵션	[illegible]

기타 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단위 : 원, VAT 포함)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2-101-0000600호	칠백구십일억오천육백팔십만원정 (₩79,156,8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illegible]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illegible]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감리회사	감리 금액	비 고
건축감리	(주)대명기술단건축사사무소	1,234,787,950원	
전기/통신/소방 감리	(주)아이비엔지니어링	313,500,000원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21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분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 단열조치 준수함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바닥난방 부위 기준 준수함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준수함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지역난방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15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별표2)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변압기로 정한 제품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센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11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 적용
	조명설치(다목)	적용	산업통산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를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침실,주방에 1개 이상 설치 및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

■ 사업주체 및 시공사

사업주체명	시공회사명
신반포1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인등록번호 : 110171-0087153)	롯데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110111-0014764)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갤러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하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정보를 안내하오니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lottecastle.co.kr

■ 분양문의 : ☎ 1811-8448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문의 1811-8448

총 280세대 중 일반분양 67세대 54 / 59 / 84A / 84B / 100㎡

※전용면적 기준

시행 신반포1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LOTTE E&C